

## [사 건 명] 행심 2015-32

###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하고, 『교내 봉사 5일 (1일 2시간)과 청구인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출석정지 10일 등』 처분을 취소한다.

### [재결이유]

#### I.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 1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 ○○○(이하 ‘피해학생’ 이라고 한다)은 3학년 3반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도부원이다. 2015. 9. 18. 청구인은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였는데, 선도부원인 피해학생이 후문에서 아침 지도를 하던 중 이를 보게 되었고, 아침 조회 시간에 청구인의 복장 건으로 담임선생님께 1일 벌점 확인서에 확인을 받기 위해 3학년 1반 교실로 갔다.

나. 담임선생님은 청구인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학교 근처 아파트에 세워 놓고 친구인 청구 외 ○○○ 학생과 함께 걸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학생에게 청구인이 자전거를 타고는 왔다고 하니까 오늘날 용서해주자고 하여 피해학생은 벌점확인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 다. 청구인은 3학년 3반 교실로 가서 피해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벌점에 대해서 화를 냈고, 피해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벌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화장실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학생이 귀찮다는 듯이 말하자 화가 나서 따귀를 한 대 때리고, 벽으로 5번 정도 밀고, 주먹으로 불을 때렸다.
- 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0. 1. 과 같은 해 10. 2.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출석정지 10일 및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을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 마. 피청구인은 2015. 10. 5.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10일 및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처분은 시험기간(2015. 10. 5.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이후인 2015. 10. 7.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이 2015. 10. 7.부터 기산하므로 2015. 10. 5.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고지하였고 출석정지 기간이 2015. 10. 7.부터 라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 사. 이에 청구인은 2015. 10.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5. 9. 18. 오후 4시경 담임선생님에게 사건 정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특별한 말씀이 없어 두 아이가 화해한 것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2015. 9. 25. 자치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피해학생 측과 연락하지 못했으나, 아무래도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2015. 9. 30.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사과를 드렸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사과전화를 한 후 자치위원회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로 취소해줄 수 없는지에 대해 보냈으나, 다음 날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다고 하자,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 2015. 10. 1.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격렬히 화를 내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다. 학교에서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학생의 부모님이 청구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피해학생 측과 미리 사과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고 1일 간 합의할 시간을 주었다. 청구인 측은 피해학생 측과 만나기 위해 자택 주소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려 하였으나 알 수 없었고, 2015. 10. 1.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전화를 거절하고 문자도 차단하여 합의 할 수 없었다.

라. 2015. 10. 4. 오전 9시 50분경 피해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만나자는 문자가 왔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과 함께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만났다. 한 시간 후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을 먼저 보내고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준비한 합의금을 드리자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1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는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해서 전달했고 이로써 사건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치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을 인정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학교 측에서 특별한 말이 없어서 청구인과 피해학생이 화해한 것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학교 측에서 9. 25. 이전까지는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담임교사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을 때렸으며, 보건실에서 처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자치위원회가 열릴 것임을 안내하였다. 또한 청구인을 통해 학교폭력사실 확인서를 보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필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답신을 자필로 써서 보냈다.
- 나. 청구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담임교사들은 두 학생에게 사과를 종용하거나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알려줄 수 없었으며,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 폭력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과 안내 절차를 밟아 처리 하였다.
- 다.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강력한 처분요청에 의해 청구인에게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청구인이 한 폭력에 관하여 심의·결정한 것이지 피해학생의 요구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작년에도 폭력 사건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교내 봉사활동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조치 의견으로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 2. 판 단

- 가. 이 사건 폭력사안의 발생 후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특별한 말이 없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2015. 9. 25. 이전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도 피해학생 측에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앞으로 청구인의 교육, 선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자치위원회 개최 이후이며 이 사건 처분 전인 2015. 10. 4.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조로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5일(1일 2시간) 및 청구인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조치하기로 한다.

##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